

남 동 구
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1547호
2020년 7월 7일
화요일

선 람	기관의 장

고 시

○ 고 시 제 1 1 8 호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2

회 람								
----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남동구

편집 : 대변인실

고 시

남동구 고시 제2020-118호

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7월 7일

남 동 구 청 장

가. 도시·군계획시설(공원) 결정조서

구분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남동문화 근린공원	근린 공원	남동구 구월동 620-13 일원	34,679	감)122	34,557	인고-128 (2000.07.08)	부분 미집행 실효

나. 실효일자 : 2020. 7. 8.

다. 실효사유 :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미 시행

라. 지형도면 : 붙임 참조

마. 관계도서는 남동구 도시재생과(☎ 032-453-2952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

